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숙인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55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숙인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3.
- (3) 회 부 일 : 2025. 4.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 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지

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숙인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의3 신설), 관련 업무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호).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의3(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u>심리상담</u> 5. (생략)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3에 따른 <u>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u>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¹⁾에 따라 실시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²⁾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시설노숙인·쪽방주민 등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약 14,404명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 1,700명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는 823명(48.4%)에 달하였으며, 특히 거리노숙인의 경우 우울증 의심 비율이 64.3%로 높게 나타났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³⁾을 부여하고,

노숙인 등에 대하여 주거·급식·의료·고용 등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⁴⁾.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임덕영 외 10인,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p.35.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전국 13개소⁵⁾ 운영중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⁶⁾ 등을 통해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고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심리상담과 더불어 일상생활 상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상담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숙인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노숙인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요 노숙인시설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재활·자활·요양시설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상담을 특정 기관의 업무로만 규정하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심리상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5) 서울(3곳), 부산(3곳), 대구, 광주, 대전, 경기(3곳), 제주

6) p.8 참고자료 참조.

<주요 노숙인시설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실적 현황>

(단위: 명, 회)

재활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기타	합계
98,624 (29.6%)	19,945 (6.0%)	97,905 (29.4%)	47,784 (14.3%)	69,123 (20.7%)	333,381 (100%)

*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며, 회수와 인원이 혼용되어 있음.

** 기타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시설별 구분 없이 제출된 실적임.

*** 자료: 입법조사처(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 한편, 노숙인 등이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10개 항목⁷⁾ 모두에서 완전자립한 경우는 74%로, 1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등이 26%로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상담도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서 필요한 도움 항목의 수>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완전자립	82.4	97.5	85.9	84.5	62.6	38.3	56.3	61.9	94.1	74.0
1-2개 도움	12.2	1.3	9.7	14.9	15.3	16.6	15.8	14.6	3.5	10.4
3-4개 도움	3.4	1.3	2.9	0.0	7.4	11.5	7.9	7.0	0.6	4.6
5-6개 도움	1.8	0.0	1.3	0.5	7.5	9.9	7.4	6.3	0.2	4.0
7-8개 도움	0.2	0.0	0.2	0.0	3.9	6.5	4.3	3.5	0.2	2.3
9-10개 도움	0.0	0.0	0.0	0.0	3.3	17.2	8.3	6.8	1.3	4.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7)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이용

□ 다만, 심리상담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나, 일상생활 상담의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관련 프로그램 신설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일정한 준비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개정안에 동의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업무
-------------	---------------------------

시설명	프로그램명
(서울)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상담
	알코올의존 회복자 상담
	정신건강 임상심리 검사
(서울) 서울시립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노숙인 척도검사 심리지원
	정신건강교육
	정신질환 노숙인 집중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부산) 부산소망 종합지원센터	심리상담
	진료적성 심리상담
	성인정신건강 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유관기관 교육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ACT
	심리상담
(부산) 부산희망드림센터	심리상담
	알코올중독 예방 프로그램
	알코올 이동상담 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집단)
	아웃리치 심리상담
(광주)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심리치료프로그램(집단)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동료상담
	심리회복프로그램
(경기) 성남시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심리코칭, 미술치료, 음악치료(집단)
	놀이치료 및 중독관리(집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경기)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상담치료(집단)
	심리상담치료
	브레인코칭교실
	창의력테라피(집단)
	캘리그래피(집단)

※ ‘개별’ 진행 프로그램은 별도 표기 안 함.

자료: 보건복지부